

2025 세법 이론노트 (이승철·박지섭 저, 나무경영아카데미) 추록 및 정오표 - 3. 19. 현재

본 정오표는 “2025 세법 이론노트 1쇄” 출간 이후 다음의 세법 개정사항 및 교재 정오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① 2025년 2월 28일에 공포된 세법 시행령 중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과 다르게 확정된 사항 및 표현의 변경사항
- ② 2025년 2월 27일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개정안”으로 표기하였음)*
- ③ 2025년 3월 14일에 공포된 세법 법률 추가 개정사항

1. 법률, 시행령 확정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영사항(1쇄에만 반영요망, 2쇄에는 이미 반영되었음)

(1) 법인세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장-1	하15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개정안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장-12	상4	~ 이자율(3.5%)	~ 이자율(3.1%) 개정안
2장-33	상17	“(4) 기타사항” 하단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3장-1	하6	⑤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 할인금액 개정안 a.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b. 내국법인의 계열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 할인금액 개정
3장-4	하1	<추가> ④ 무형자산의 ~	④ 공동연구개발비: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 개정안 ⑤ 유형자산의 공동사용료(토지 및 건축물 제외) 개정안 a. 고정비: 소유지분비율 b. 고정비 외의 비용: 사용비율 ⑥ 무형자산의 ~ (수정 전 ④와 동일)
3장-32	상7	③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③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술협력단(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 개정
8장-8	하4	<추가>	출판업 경영 증기업 10% 개정
8장-20	상1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11장-32	하13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2장-33 “(4) 기타사항” 하단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세법특이사항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에 대한 경과규정 **개정**

2022년에 폐지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특례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2025년에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는 종전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특례규정과 현재의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상장법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선택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특례규정]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지분율	익불률	지분율	익불률
20% 이상 ~ 30% 미만	80%	40% 이상 ~ 50% 미만	80%
30% 이상 ~ 40% 미만	90%	50% 이상 ~ 80% 미만	90%
40% 이상	100%	80% 이상	100%

※ 8장-20 상1부터 상14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1.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개정**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개정**에 투자하는 경우의 기본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a.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 3%(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처음 3년간 9% **개정**) 적용
 - b.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c 제외) : 15%(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처음 3년간 20% **개정**) 적용
 - c.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 20%(중소기업 30%,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처음 3년간 9%) 적용 **개정**
- *2.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며**,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이 없는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개정**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③의 세액공제액과 ④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a+b
a. 기본공제 : 당기 투자액×1%(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1
b. 추가공제*2 : (당기 투자액-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10%

- *1.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의 기본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a.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 3%(중견기업 8%, 중소기업 14%) 적용
 - b.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c 제외)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적용
 - c.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적용
- *2.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며**,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이 없는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세액공제 방법(이하 내용은 1쇄와 동일)
⑥ 세액공제액의 추정(이하 내용은 1쇄와 동일)

※ 11장-32 하13부터 하1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항목별 구분에 따른 수입은 제외하며,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중 **큰 수입을 제외한다. 개정** ...▶ 비영리-1
-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 해당 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포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수입 **개정**

$$\text{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주)} \times \frac{\text{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text{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주)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1장-6	하7	~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출국한 기간이 개정안 ~	~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척 경조사,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등에 해당하여 개정 ~
3장-4	하3	① ~ 매출할인액 제외)*1,*2	① ~ 매출할인액 제외)*1,*2,*3
3장-5	상5	⑤ ~ 이익 또는 분배금*3 ④ ~ 사용한 금액*4 ⑥ ~ 보험차익*3	⑤ ~ 이익 또는 분배금*4 ④ ~ 사용한 금액*5 ⑥ ~ 보험차익*4
	상17 ~상24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정합니다.	
3장-6	하17	⑥ 근로소득에서 정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 할인금액(사업자가 계열회사 지급하는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개정안	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 할인금액 개정
4장-2	상1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정합니다.	
4장-7	하2	b. ~ (해당 지배주주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b. ~ (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4장-8	상1	*2. 사용자로부터 세 차례 이상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출생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급여와 그 다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안	*2.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

4장-9	하13	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를 합한 금액×20%	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를 합한 금액×20%
4장-32	상10	<추가> ② 해지 전 ~	②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2025. 7. 1.부터 시행) 개정 ③ 해지 전 ~ (수정 전 ②와 동일)
6장-10	상3	*2. 체육시설이용료의 범위에는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 세무회계	*2.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체육시설이용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세무회계
6장-13	하4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000만원 이하	600만원 개정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개정
		1억원 초과	2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000만원 이하	600만원 개정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500만원 개정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개정
7장-29	하14	~ ×15%	~ ×15%*3
	하3	<추가>	*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공제율을 30%로 한다. 개정
8장-11	상1	(3)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정산(2025. 7. 1.부터 시행)	(3)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정산(2026. 1. 1.부터 시행)

※ 3장-5 상17부터 상2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1.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 *2. (기존 내용과 동일)
- *3. 근로소득에서 정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 할인금액으로서 사업자가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에 따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 *4.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5. '총수입금액불산입 ④'에 해당하는 항목의 구체적 내용

※ 4장-2 상1부터 상11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①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자사제품등**)을 임원등에게 **시가^(주)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의 구입 또는 제공받는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②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계열회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③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주)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주) 시가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 a.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 b. 담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장-11	상15	*3.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3. ~ 4촌 개정 이내의 혈족, 3촌 개정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2장-41	상4	<추가> ④ ①부터 ③까지의 ~	④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개정 ⑤ ①부터 ③까지의 ~ (수정 전 ④와 동일)
3장-2	하4	①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 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a.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것 b. 분양권 중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 외함)이 10억원 이하인 것 개정안	①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4장-1	하14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 ~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①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 은 상속인으로 봄 개정)이 ~
8장-14	상10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8장-16	하12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 국세기본법 8장-14 상10에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세무사시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개정**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해당 신설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는 규정이므로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8장-16 하12에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11. 이행강제금 **개정**

참고 해당 신설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규정이므로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경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시험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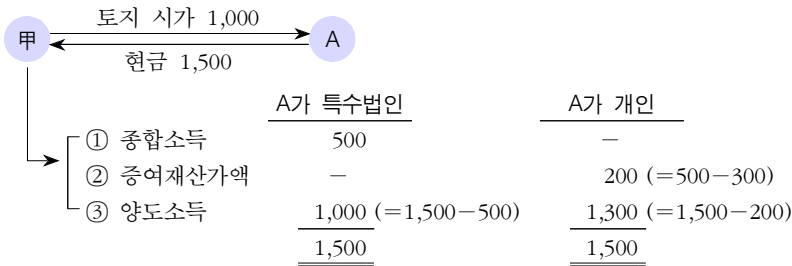
II. 교재 오류 수정사항

(1) 1쇄 오류 수정사항(2쇄에는 이미 반영되었음)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법인세 3장-9	상18	② ~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② ~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법인세 3장-16	상4	$\ast 800\text{만원} \times \frac{\text{보유월수}}{12}$	$\ast 800\text{만원} \times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법인세 11장-4	상3	~ 1년을 초과하지 함	~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 11장-32	하16	③ ~ 수입 ^{*1,*2,*3} (∴ 부동산 재테크)	③ ~ 수입 [*] (∴ 부동산 재테크)
법인세 11장-33	상12	시가 100 └──────────┘ 고유목적사업 8년 시가 200	시가 100 └──────────┘ 고유목적사업 8년 처분 200
소득세 2장-23	상14	b. 파생결합증권 등 ~	b. 파생결합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개정 , ~
소득세 10장-17	하10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소득세 10장-21	하2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국기법 4장-5	하9	② 과점주주 : ~	② 과점주주 및 과점조합원 : ~

※ 소득세 10장-17 하10부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사양 고가양도



참고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의 문제점

A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경우에는 A법인에게 의제기부금규정이 적용되어 A법인이 거주자 甲에게 비지정기부금 200(=1,500-1,000×130%)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된다. A법인은 비지정기부금 200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200 기타소득’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甲에게는 200의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타소득 과세액을 甲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기타소득 과세액 - 증여재산가액

(2) 2쇄 오류 수정사항(2쇄에는 이미 반영되었음)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법인세 3장-16	상4	$\ast 800\text{만원} \times \frac{\text{사업연도}}{12}$	$\ast 800\text{만원} \times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소득세 3장-5	상5	⑥ ~ 보험차익 ^{*5} ④ ~ 사용한 금액 ^{*4}	⑥ ~ 보험차익 ^{*4} ④ ~ 사용한 금액 ^{*5}